

現場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權限受任을 받은 同 事業所를 設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出席委員 全員 贊成으로 原案可決하였습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各 5件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투자관리관”을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으로,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하며, “예산담당관”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총괄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2담당관”으로 하고, “재정1계장”을 “투자심사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쓰레기 매립지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2. 안정화 사업
3.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방법 연구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p>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제 및 사무분장) 사업소의 직제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10%를 적용하는 소급적용의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第82回 臨時會 때 저희 會議에서 1996年 1月 1日 이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해서만 住民稅率을 10%로 적용하도록 改正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에서 事業年度가 2個年度에 걸친 法人의 경우에는 稅率을 적용할 때 細部執行上 混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再議해 왔습니다.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의결한 내용은 判例 등에 비취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納稅者 보호측면에서 執行部와 절충하여 새로운 改正案을 委員會 發議로 곧 提出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改正案과 다를 바 없지만 附則 단서조항에 1995年 12月 31日 이전에 課稅期間이 종료된 所得稅, 法人稅 등에 대한 住民稅率은 7.5%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規定한 것입니다. 改正案과 다른 내용이 없지만 納稅者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1995年 12月 31日 이전에 課稅期間이 종료된 所得稅, 法人稅 등에 대해서 住民稅率을 7.5%를 적용한다고 附則에 못을 박음으로써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 案件이 이번 3月末까지 公布되어야 하는 時間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즉, 서울에 대한 法人이 이러한 金額으로서 1,550餘 億원이 해당이 되고, 이번 5月 所得稅 申告까지 따르면 2,300億원에 이르는 서울市民의 住民稅가 節減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再議 要求된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은 다음 案件으로 上程된 우리 委員會 案을 可決시켜 주시고, 이 再議案에 대해서는 기립하지 마시고 부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종전에 있던 案件은 否決處理하고, 바로 다음에 折衷案으로 附則에 좀더 具體的으로 明示된 案件을 通過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를 明確히 규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再議要求된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따라서 在籍議員 과반수의 出席과 出席議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전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는 條例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在席議員을 확인한바, 議決定</p>
<p>10.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再議要求의件(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1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再議要求의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樞 3打) 同 條例案은 1996年 2月 29日 第82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되어 執行機關에 移送하였으나 1996年 3月 16日 서울特別市長이 地方自治法 第19條第3項 및 同法 第98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同 條例案을 다시 議決하여 줄 것을 要求해 온 案件입니다. 再議要求에 대한 理由說明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本 案件의 所管委員會인 財務經濟委員會 文錫珍 委員長 나오셔서 再議要求에 대한 意見を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 文錫珍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財務經濟委員會 文錫珍 委員長입니다. 지난 地方財政交付金法의 改正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議會가 住民稅 所得割 標準稅率을 7.5%에서 10%로 인상을 해서 96年 1月 1日부터 施行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地方稅法의 改正 公布 內容을 우리는 反映을 해서 95年 12月 27日 서울特別市 條例를 改正한 바 있으나 서울市長이 1995年 12月 31日 公布 施行함으로써 遡及課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地方稅法에 의하면 改正된 住民稅率 10% 引上案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여야 하나 1995년에 終了되는 事業에 대해서도</p>	